

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3호 2003. 11 4)

총 무 위 원 회

2003. 11. 5 (수)

1. 심사경과

가. 2003. 10. 23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3. 10. 23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3. 11. 4 :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총무과장 김영고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 제1789호)이 2003. 1. 20 개정됨에 따라
우리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
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무원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상향 조정함.(안 별표1
및 별표2)

가. 일반의사의 의료업무수당

- 1) 가급(군지역) :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에
의한 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「가」 지
역적용(우리시 해당)

- 전문의 : 월 650,000원→909,000원 (증 259,000원)

- 일반의 : 월 550,000원→818,000원 (증 268,000원)

2) 나급(시지역)

- 전문의 : 월 550,000원→850,000원 (증 300,000원)

- 일반의 : 월 450,000원→750,000원 (증 300,000원)

나. 장려수당

-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

- 근무자 : 월 180,000원 → 월 250,000원(증 70,000원)
-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
 - 월 150,000원 → 250,000원(증 100,000원)
- 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
 - 월 120,000원 → 230,000원(증 110,000원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(대통령 제1789호)이 2003. 1. 20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